



서울특별시 중구



수신 내부결재 공고 제 800 호
(경유)

제목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과-12149(2021.10.19.)호와 관련입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고일 : 2021. 10. 21.

라. 공고기간 : 2021. 10. 22. ~ 11. 10. 【20일간】

불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김주희 기획팀장 이옥화 기획조정과장 김창수 행정지원국장 전결 10/21
01인모

협조자 주무관 代장연희 의회법제팀장 박성현



시행 기획조정과-12295 (2021.10.21) 접수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 <http://www.junggu.seou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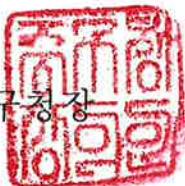
전화 3396-4905 / 전송 02-3396-8657 / juhee24@junggu.seoul.kr / 대시민공개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의신청 결과 확정 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불합리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 단축 필요

2. 주요내용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
-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기획조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3396-4913, FAX: 3396-8657, 메일:juhee2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 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이의신청)</p> <p>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16조(이의신청)</p> <p>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u>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u>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u>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u> 그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u>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u>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u>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